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

□ 주택용 분전반 관련 판단기준 개정 내용 / 2018. 3. 9

<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102호

>

현 행	개 정
제171조(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) ①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·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. 1. (생략) 2. (생략) 3.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(2016) "7. 구조, 치수 및 재료"에 의한 것일 것. 4.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,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[KS C 8326(2007)의 8.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]이 있도록 시설할 것.	제171조(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) ①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·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(신발장,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)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"7. 구조, 치수 및 재료"에 의한 것일 것. 4.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(KS C 8326의 "8.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"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)이 있도록 시설할 것.
	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제171조(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)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, 주택법 제15조 (사업계획의 승인)에 따라 사업승인, 건축허가·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.

□ 시행시기 : 산업통상자원부 공고(제2018-102호, 2018. 3. 9) 판단기준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8. 3. 9일부터 적용

ㅇ 2018. 3. 9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,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 시점과 그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
- 관련법 : 건축법 제11조, 제14조, 주택법 제15조

□ 적용대상 : 주택법 제2조에 따른 '주택' 과 '준주택'

ㅇ 주택 : 단독주택과 공동주택

ㅇ 준주택 : 기숙사, 고시원,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

-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/ 건축법 시행령 별표 1

* 주택용차단기 사용 장소와 동일 적용

□ 적용방법 : (주택용 분전반) 노출된 장소 시설하며,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

ㅇ 노출된 장소 : 주택용 분전반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은폐되지 않은 벽면 등

ㅇ 은폐된 장소 : 주택용 분전반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로 신발장, 옷장, 창고, 드레스룸 등

ㅇ 미관을 위한 주택용 분전반 인테리어

- 주택용 분전반을 미관상 인테리어할 경우 **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**

1. 분전반 캐비닛*과 도어 사이 물건을 **적재할 공간이 없을 것**
2. 도어** 겉면에 **분전반 표시를 할 것**
3. 주택용 분전반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소재***가 **판단기준 제171조제1항 제4호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일 것**

* 내부 기기를 넣은 용기로 커버가 붙은 것과 도어가 붙은 것

** 캐비닛의 앞면을 덮도록 경첩으로 박스 등에 지지되어 이것을 개폐할 수 있는 부분

*** 캐비닛, 도어 등 분전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재료

ㅇ 주택용 분전반의 인증(KS 등) 여부

- 인증제품이 아니어도 KS C 8326의 7. 구조, 치수, 재료에 따를 경우 설치 가능

설치사례 예시

□ (설치가능) 주택용 분전반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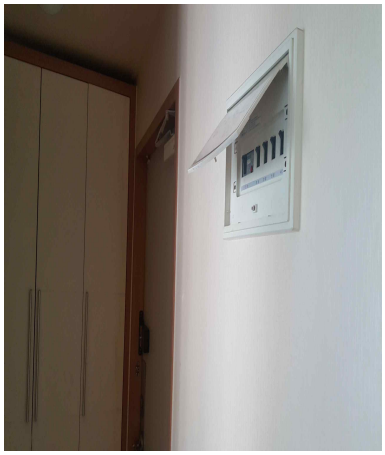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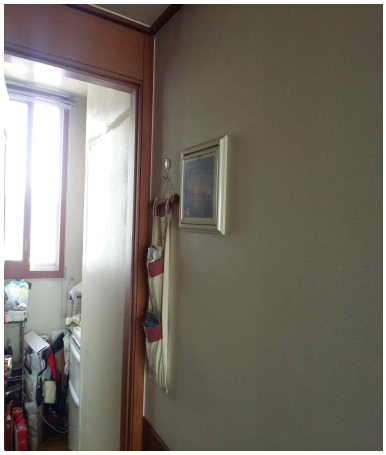

□ (설치불가) 주택용 분전반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

○ 신발장

○ 창고

□ 미관을 위한 **주택용 분전반 인테리어**

○ **(설치가능)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**

1. 분전반 캐비닛과 도어 사이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고,
2. 도어 겉면에 '분전반' 표시가 있고,
3. 인테리어 소재가 판단기준 제171조제1항제4호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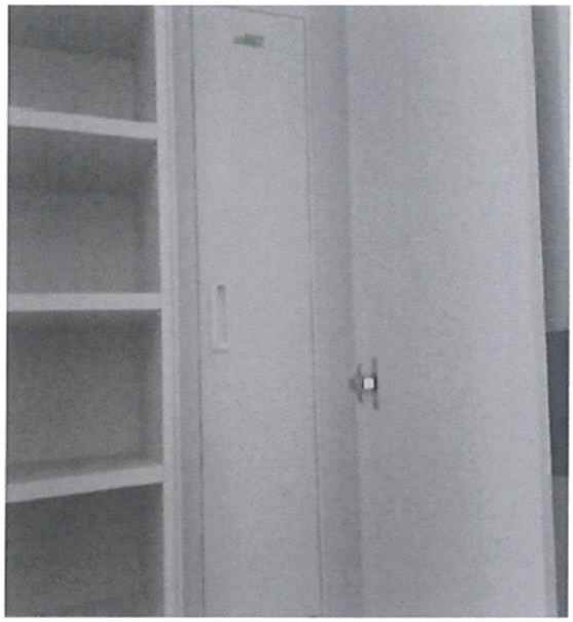

○ **(설치불가)** 분전반 캐비닛과 도어 사이 **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있는 경우**

※ 도어 겉면에 '분전반'표시가 있고, 인테리어 소재가 판단기준 제171조 제1항제4호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라 해도 **설치불가**